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문 별거후 직장서 받은 주식 부부 공동 재산인가

〈문〉 저는 남편과 35년간 살다가 현재는 별거중입니다. 남편은 곧 이혼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얼마전 2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20년간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상당량의 주식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주식이 우리가 별거한 이후에 받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남편의 시유재산이라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답〉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하면 별거 이후에 개인에 의하여 취득된 모든 재산은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산의 취득시기가 별거이후라 하더라도 재산 취득의 원천이나 원인이 결혼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면 그 재

산은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이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은 비록 취득 시기가 별거이후라 하나 별거이후에 남편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니며, 회사가 비록 남편 개인에게 Gift로 주식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Gift를 자급하게 된 주된 동기는 남편의 지난 20년간의 지속적인 근무 실적, 회사에 대한 봉사와 공로 여부 등으로 남편의 주식 취득의 원인은 사실상 결혼 기간에 발생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 배우자가 쓴 소설에 대한 권리 청구 가능한지

〈문〉 저는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두 자녀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문학 작가로서 결혼 기간 중 두개의 소설을 집필하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내는 그 두 개의 소설 중 하나에 대하여 제 삼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그에 따른 판결액을 지급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내의 소설과 아내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액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요?

〈답〉 첫째, 아내가 결혼 기간 중에 집필하고 발

간한 두 개의 소설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그 소설에 대한 Royalty의 50%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미 연방 저작 혹은 판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작가에게 주어집니다. 단, 결혼 기간 중에 창작되고 집필되어진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받은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액은 그 저작권 자체가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귀하께서는 판결액의 50%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 유산 처리는

〈문〉 저의 이모님과 어머님이 얼마전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당도한 후 수술 준비중 두분 다 운명하셨습니다. 이모님은 자녀가 없습니다. 이모님이 남긴 유서에 의하면 이모님 사망시 저의 어머님이 생존할 경우 모든 재산을 저의 어머님께 상속하기로 되어있고 만약 저의 어머님이 이모님보다 먼저 운명하셨을 경우에는 이모님의 전 재산이 이모님의 병구원을 해준 친구 분에게로 상속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캘리포니아 주 유산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그 피상속인의 유서에 상속인으로 지명된 자가 불의의 사고로 거의 동시에 사망했을 때, 상속여부가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더 오래 생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될 경우, 피상속인보다 상속인이 늦게 사망했다는 명백한(Clear and Convincing) 증거 제시가 없이는 상속인은 상속을 넘기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모님의 유서는 귀하의 어머님이 이모님의 사망시 생존해 있어야만 이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사고 당시의 관계자 및 목격자, 경찰 당국, 사고 구조원, 병원 의료진 등의 상세한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하여 이모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모님이 어머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판결을 내릴 경우, 이모님의 전 재산은 이모님의 유서에 의해 어머님께로 상속되며, 어머님의 유산은 어머님이 남기신 유서에 의해 다시 분배됩니다. 만약, 이모님과 어머님의 사망 시기의 순위가 명백하지 못 할 경우, 이모님의 재산은 어머님이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